

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 의사·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

하자심사·분쟁조정위원회 의사·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사업주체·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이에 시공 상의 하자 여부를 다투는 경우

제11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의2. 사업주체·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이에 하자의 책임범위 및 손해 배상을 다투는 경우

제13조제2항제1호 중 “임차인 또는 사업주체등”을 “임차인, 사업주체등, 설계자, 감리자, 수급인, 하수급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임차인 대표회의 또는 사업주체등”을 “임차인대표회의, 사업주체등, 설계자, 감리자, 수급인, 하수급인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이후 하자분쟁조정위원회
에 분쟁조정 등이 신청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하자심사,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의 구분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하자를 심사한다. 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 5. (생 략)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분쟁을 조정 및 재정한다. 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 5. (생 략)	제11조(하자심사, 분쟁조정 및 분쟁재정의 구분) ①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4의2. 사업주체 ·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이에 시공 상의 하자 여부를 다투는 경우</u> 5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4의2. 사업주체 ·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이에 하자의 책임범위 및 손해배상을 다투는 경우</u> 5.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사건의 신청기준) ① (생 략)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건을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신청을 받는다. 1. 전유부분 : 입주자(구분소유	제13조(사건의 신청기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-----

자를 말한다), <u>임차인 또는 사업주체등</u> 2. 공용부분 : 입주자대표회의, 관리주체(하자심사 사건에 한한다), 관리단,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 제46조에 따른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입주자 5분의 4 이상, <u>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사업주체등</u> ③ ~ ⑤ (생략)	----- <u>임차인, 사업주체등, 설계자, 감리자, 수급인, 하수급인</u> 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임차인대표회의, 사업주체등, 설계자, 감리자, 수급인, 하수급인</u> ③ ~ ⑤ (현행과 같음)
--	---